

# 예비심사보고서

【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

의안번호  
864

2025. 12. 11.  
도시교통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5. 11. 21.(남양주시장)
- 나. 회부일자 : 2025. 11. 21.
-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5. 12. 9. / 2025. 12. 11.

## 2. 예산안 규모

(단위 : 천원)

구분	2025년도 제3회 추경	2025년도 제2회 추경	증 감	증감률(%)
계	2,914,072,790	2,797,313,253	116,759,537	4.17%
일반회계	2,515,024,931	2,400,231,000	114,793,931	4.78%
특별회계	399,047,859	397,082,253	1,965,606	0.50%
공기업특별회계	260,675,268	260,968,382	△293,114	△0.11%
기타특별회계	138,372,591	136,113,871	2,258,720	1.66%

## 3.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안

-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2조 7,973억 1,325만 3천원에서 4.17%인 1,167억 5,953만 7천원이 증가한 2조 9,140억 7,279만원으로 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13.5%에 해당함.

□ **기타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333억 353만 9천원에서 3.09% 증가한 343억 3,401만 6천원으로 시 전체 기타특별회계 예산의 24.81%에 해당함.

○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소관부서별 편성 내역으로

■ 먼저,

도시국 소관 예산안으로 기정예산액 523억 1,673만 8천 원 보다 4.87% 증가한 548억 6,213만 6천 원이며, 주거급여 25억 5,777만 8천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음

■ 다음은,

교통국 소관 예산안으로 기정예산액 2,031억 203만 5천 원 보다 0.73% 증가한 2,045억 8,368만 7천 원이며,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 16억 7,537만 6천 원, 경기패스 1억 5,757만 1천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음

■ 다음은,

미래도시추진단 소관 예산안으로 기정예산액 188억 8,705만 9천 원 보다 196.93% 증가한 560억 8,133만 5천 원이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370억 9,427만 6천 원, 맨발길 조성사업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으로 기정예산액 344억 7,085만 원 보다 1.60% 감소한 339억 2,019만 1천 원이며,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2억 727만 4천 원 등을 증액 편성함

-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으로 기정예산액 443억 1,927만 7천 원 보다 0.58% 증가한 445억 7,490만 8천 원이며, 평내초등학교 일원 지중화 공사 3,850만 원,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1억 9,676만 1천 원 등을 증액 편성함

○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으로

- 개발제한구역주민지원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98억 561만 4천 원보다 0.04% 증가한 98억 945만 4천 원을 편성하였음.
-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227억 7,279만 원보다 4.53% 증가한 238억 529만 4천 원을 편성하였음.
-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7억 2,207만 원보다 0.81% 감소한 7억 1,620만 3천 원을 편성하였음.

○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으로

■ 공기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2,609억 6,838만 2천 원에서 0.11% 감소한 2,606억 7,526만 8천 원으로 시 전체 특별회계 예산의 65.32%에 해당하며

■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826억 8,726만 5천 원보다 0.19% 증가한 828억 4,502만 2천 원을 편성,

■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782억 8,111만 7천 원보다 0.25% 감소한 1,778억 3,024만 6천 원을 편성하였음.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서진원)

○ 추가경정예산은 예산 확정 후 예측하지 못한 사유의 발생과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 재원의 변경, 기타 여건의 변화 등으로 세입 세출에 변동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편성되는 예산안으로,

○ 지방재정법 제4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라고 규정한 법적 요건과 ‘예산 성립이후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경비의 과부족이 있을 때’ 라는 사실적인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 이러한 요건의 충족 여부와 함께 기정예산에서 충당할 수 있는 예산이 불필요하게 편성되지는 않았는지, 사업예산의 경우 사업의 필요성·타당성 및 예산 산출액의 적정성 등 심사방향을 고려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4. 질의·답변 요지

- 회의록 참고

#### 5. 토론요지

- 없 음

#### 6. 심사보고 요지

- 전체 조정금액 : 감 30,000천원(세부내역 ‘별첨’ 참고)

##### ▶ 미래도시추진단(조정금액: 감 30,000천원)

##### ■ 도시재생과

- 경기 **휴향기 맨발길 조성사업**은 인근에 경관녹지 조성을 위한 상당한 금액이 소요될 예정이며, 유사하게 설치된 기존 타 읍면동 맨발길의 유지 보수 문제에 대한 구체적 대책이 부존재하고, 시민 접근성 측면에서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전액 삭감함.

#### 7. 심사결과 : 「수정가결」

□ 별첨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조서>

사업명 (부기)	예산액				비고 (페이지:명세서/설명서)
	(A)예산액	(B)요구액	(C)삭감액	(A-C)조정액	
총계	30,000	30,000	▲30,000	0	
미래도시추진단	30,000	30,000	▲30,000	0	
도시재생과	30,000	30,000	30,000	0	
경기 휴향기 맨발길 조성사업 (401-01 시설비)	30,000	30,000	▲30,000	-	(186/297)
○경기 휴향기 맨발길 조성사업	30,000	30,000	▲30,000	-	